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1,000,000	12,030,000
일반회계	390,237,534	11,707,126
특별회계	10,762,466	322,874
기타특별회계	10,762,466	322,874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086,454	32,594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180,764	35,423
건축진흥특별회계	400,000	12,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477,700	14,331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09,000	15,27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19,168	3,575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890	2,007
드림빌특별회계	1,954,911	58,64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52,584	43,5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14,995	105,4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84,71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